

싱가포르의 수출통제제도

I. 머리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나, 개방경제 체제 및 대외무역 의존형 경제구조를 추구하여, 교역규모로는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을 이루고 있다. 자유 시장경제 하에 시장 진출 입이 자유롭고, 자유무역을 추구하여 수입장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어느 국가보다 기업하기 쉬운 나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다국적 전자 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현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전세계 물품이 집결하고 인근 각지로 재수출되는 ‘중계무역센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연간 총 수입액의 40%가 재수출 물량에 해당되며, 재수출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에 까지 이루어진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무역체제를 갖추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체제도 보유하고 있다. '03년 제정된 전략물자통제법(SGCA : Strategic Goods Control Act)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다자간 수출통제협력에도 적극적이어서 '04년 4월에는 일본정부와 민감한 무기 불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맺었다. 또한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고자 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04년에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였다. 또한 '03년에는 세계에서 7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컨테이너안보구상(CSI)에 가입하였다. 이에 미국 세관원과 국경수비대 관리로 이루어진 조사팀이 싱가포르 당국과의 협력하에 모든 미국행 화물을 선적 이전에 검색하고 조사하고 있다. '07년에는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통제리스트를 국제수출통제체제 기준에 맞추고 국제규범이 개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국내규정을 최신화 하였다.

위와 같이 싱가포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영해안보가 중계항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WMD 확산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국제적인 신뢰도를 유지하고 자유무역항으로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자유 시장 경제의 흐름을 제한하지 않도록 만반을 다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는 체제(ICP)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허가절차를 최소화하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정부가 직접 조성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경제적 이윤 추구하고 정부의 국가 안보가 더 이상 양립이 아닌 상생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동남아 무역의 허브로서 위치를 고려하여 합법적 거래는 촉진하는 반면 전략물자의 불법거래에 강력히 대응하는 효율적인 수출입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싱가포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에 관하여 그 법적근거, 통제지역 및 대상 품목, 수출허가, 집행 및 법칙,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법적근거

1. 전략물자통제법 (SGCA : Strategic Goods Control Act)

싱가포르는 '03년 1월 1일부터 전략물자통제법(이하, SGCA)이 실시하면서 부터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¹⁾ 도입하기 3, 4년 전 기존 수출 통제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미 SGCA 준비작업이 착수되었으며 특히 '01년 9. 11테러 등 각종 테러 사건 발생으로 사업 진척도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국제안보를 위해 전략물자의 불법적 이동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자에게만 전송하도록 감시해야할 당위성이 증대된 것이다.²⁾

SGCA는 전략물자 및 기술을 포함하여 WMD 제조 및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³⁾의 이전 및 중개행위를 통제한다.⁴⁾ 통제대상이 되는 품목 및 기술은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허가 및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역거래를 실행할 수 없다. 또한 전략물자/기술 외 품목 중 WMD 개발과 관련될 경우 캐치올(catch-all) 조항을 통해 통제하고 있으며 우려 최종용도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통제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전략기술이 기록, 보존, 내장된 서류의 수출도 통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전략기술의 제공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자 매체를 통해 국내로부터 제공되는 경우; 또는
- ② 싱가포르 국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특정 기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⁵⁾

1) 싱가포르는 현재 수출통제 관련 국제조약 중 하나인,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만 가입되어 있다.
2) The Strategic Goods (Control) (Amendment) Bill Second Reading Speech by the Minister of State for Trade & Industry Mr S Iwaran During Parliament Sitting on 17 Sep 2007.
3) 구체적으로, WMD '개발, 생산, 운영, 저장, 획득, 사용'이 우려되는 물자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4)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v.sg/stgc/leftNav/ove/Legislation.htm>>.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SGCA를 개정하여 '08년 1월 1일부로 전략물자 통제리스트가 확대되었다. 이는 전략물자 통제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함과 동시에, 대량과 피무기 운반 및 반입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의지에 협력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SGCA는 그 밖에도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존 법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⁶⁾ 이 법들은 SGCA 발효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 전략물자통제규정 (SGCR : Strategic Goods Control Regulations)

SGCA를 집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으로, 전략물자통제규정(이하, SGCR)이 있다. '04년 1월 7일 제정된 이 규정은 수출허가의 신청, 취소, 정지에 관한 조건 및 개별허가, 포괄허가 및 중개업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SGCR은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뉘져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SGCR 구성⁷⁾

구분		구체적 내용
제 1부	서문	용어 정의
제 2부	허가	개별허가 · 포괄허가의 적절한 신청 시기, 첨부서류, 허가 조건, 유효기간, 포괄허가 사용실적의 보고의무 등
제 3부	등록	전략물자 중개를 위한 등록신청, 등록 조건, 유효기간, 취소 등
제 4부	서류 보관	서류 보관
제 5부	기타	벌칙, 몰수 등

5) 단, 허가를 취득하여 수출을 완료한 화물의 실치, 조작, 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특허출원을 위한 기술이전, 기초과학분야의 기술이전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한편, 국제 법에 따라 싱가포르의 영해와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 역시 통제대상이 아니다.

6)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v.sg/stgc/leftNav/ove/Legislation.htm>>.

기존 관련 법과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입규제법 (제272A 장) (RIEA :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

수출입 규제, 등록, 통제 및 관련 사항에 관한 조항 서술. 수출 규제지역에 대해 무기 및 군사품의 수출 금지.

② 화학무기금지법 (제 37B 장) (Chemical Weapons (Prohibition) Act)

화학무기금지조약(CWC)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위해 제정됨.

③ 무기·폭약법 (제 13 장) (Arms and Explosives Act)

무기와 폭발물의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운송, 수출입 등을 금지함.

④ 방사선방호법 (제 262 장) (Radiation Protection Act)

방사능 물질 및 방사 장치의 수출입, 판매, 운송, 보관, 사용을 통제함.

⑤ 국제연합법 (제 339장) (United Nations Act)

싱가포르 국내 혹은 국외의 어떤 싱가포르 국민이라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무기와 그 관련 기재를 테러리스트에게 수출, 판매, 공급, 발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7) '07년도 개정 SGCR.

동 규정에 따르면 싱가포르 관세청 담당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SGCR은 전략물자에 관한 허가, 철회, 연기 조건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SGCA가 개정됨에 따라, SGCR도 개정되어 '08년 1월 1일부로 실시되고 있다. 개정된 SGCR은 통제리스트에 포함된 전략물자의 환적/통과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면제하고 있다.⁸⁾

- ① 싱가포르내 자유무역지대(FTZ)로 즉시 유입된 경우
- ② 싱가포르 정박 기간동안 내내 FTZ에 머무는 경우
- ③ 특정 기간⁹⁾ 동안 FTZ에 머무는 경우

단, 필요시 관세청은 이러한 운송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서를 요구할 권한을 지닌다. 또한 화학무기금지조약 통제리스트에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물품이라도 화학물질 함유도가 화학무기(금지)법에 명시된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통제 대상에서 면제된다.

3. 전략물자(통제)령 (Strategic Goods (Control) Order 2007)

싱가포르의 통제대상 물품/기술 목록을 고시하고 있다. '07년도 개정을 통해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WA, AG, NSG, MTCR) 통제리스트 상의 모든 품목/기술을 반영하여 통제리스트를 확대하였다. 이 목록은 1부 군수품목과 2부 이중용도 품목으로 구분하여¹⁰⁾ 기존 600여개 물품 외에 약 1000여개의 물품이 추가되었으며 주로 바세나르(WA) 체제 이중용도 품목을 추가하였다.¹¹⁾ 자세한 사항은 'III. 통제지역 및 품목'에 기술되어 있다.¹²⁾

한편,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리스트가 개정됨에 따라서 싱가포르 관세청도 전략물자 통제리스트를 갱신하였다. 이에 따라 '07년 전략물자(통제)령 대신 '09년 전략물

8) SGCR 제13조.

9) SGCR 제13조에 따라 수상운송은 45일, 항공운송은 21일 이내 - 다중 운송체계 이용시 싱가포르 FTZ로 반입될 때 사용된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한다. (13조 예외조항 SGCR 2007)

10) Handbook of the STS, p6. 同 핸드북은 다음의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customs.gov.sg/NR/rdonlyres/E5D64083-A9B0-424D-A585-87250213455A/23703/HandbookontheSTS14Apr2009.pdf>>

11) "Korea - SE Asia Strategic Trade: Controls And Considerations", MKE and CITS Industry Outreach Seminar October 8, 2008 Seoul, Korea.

12) 통제리스트는 다음의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customs.gov.sg/NR/rdonlyres/74516473-349A-4888-98B5-9D0B176B2D55/0/HSCConcordanceJan08.pdf>>

자(통제)령이 '09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기존 목록에 새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였으며 부연설명을 추가하였다. '09년 싱가포르 통제리스트 수정 사항은 <표2>와 같다.

<표 2> 싱가포르 전략물자 통제리스트 수정내용¹³⁾

종류		개정사항
군용물자		ML2a, ML4b, ML4c 등 8개 항목 추가, ML19e 삭제, ML9a, ML13c 부연설명
이중용도	개념정의	Adjusted Peak, APP 등 11개 추가, CE, CTP 등 4개 삭제, Bias, peak power 등 4개 수정
	물자	0B001.b, 1A004, 1C111.b.5 등 31항목 추가, 1C008.c, 2B007.b., 3A001.a.2 등 5항목 삭제, 1C005, 1C107.b ~ d, 1C353a 등 31항목 확대, 1B001.f.1, 1C111.a.4, 1C117 등 13항목 축소, 1A002, 1C008.a, 1C111.a.3 등 12 항목 부연설명

4. 전략물자 중개(통제)령 (Strategic Goods Control Brokering Order 2007)

중개시 등록이 필요한 물자/기술 목록을 고시하고 있다. 동 령에서는 중개를 “제3국 간 물자운송에 대한 계약 협정 혹은 교섭을 촉진하는 모든 행위”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5. 수출통제 관련 회람 (Circular)

수출통제 관련 회람은 수시로 발간되고 있으며 '03년 2월부터 '09년 2월까지 발간된 주요 공지는 다음과 같다

13)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v.sg/NR/rdonlyres/B9BCDB9B-61B7-4B3B-A9FF-B62AECE52EA1/23406/HighlightsofKeyChangestotheStrategicGoodsControlLi.pdf>>.

가. 싱가포르 관세청 (Singapore Customs) 설립에 관한 회람 (Circular No: 10/2003)¹⁴⁾ 관세청(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의 관세 집행기능과 무역문서 기능, 그리고 국제기업청(IE)의 무역촉진부(Trade Facilitation Division)와 통계조사부(Statistical Audit Division)의 합병을 통해 싱가포르 관세청이 '03년 4월 1일부로 새로 발족되었다.

나. 이라크 수출입금지조치 철폐에 관한 회람 (Circular No:22/2003) 유엔안보리결의 1483호가 '03년 제정됨에 따라,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가 철폐되어 '03년 7월 8일부로 무기 관련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이라크와의 수출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 이란, 북한을 대상으로 한 특별수출규제 도입에 관한 회람(Circular No:28/2003) '0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란 또는 북한에 별표 A(Annex A)에 기재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적어도 3일(72시간) 전에 TradeNet에 허가신청토록 하고 있다. 또한 수출시에는 최종사용자진술서를, 재수출시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허가를 제출해야 한다.

라. 승인기업체제 'Approved Company Scheme'의 도입에 대한 회람 (2003. 11. 1) 기업에 자율준수 프로그램(ICP)의 제정 및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03년 11월 1일 승인 기업 체제(Approved Company Scheme)를 도입하였다¹⁵⁾.

마. 리비아 대상 특별수출규제 도입에 관한 회람 (Circular No: 2/2004)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회람으로 리비아에 대하여 이란, 북한의 특별수출제도와 같은 내용의 통제를 도입하였다. 규제 품목 역시 동일하다.

바. 코트디부아르 대상 무기 및 군수품의 수출금지에 관한 회람(Circular No : 27/2004) 유엔안보리결의 1572호(2004)에 근거하여 '04년 12월 11일부터, '05년 12월 16일까지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무기 및 군용물자 등 수출금지조치가 시행되었다.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라이베리아, 르완다, 시에라 리온(Sierra Leone), 소말리아 등과 같다. 이 조치는 '05년 12월 16일에서 '06년 12월 15일로 연장되었다.

14) 모든 수출통제 관련 회람은 다음의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customs.gov.sg/topNav/new/Circulars.htm>>.

15) ACS는 07년 6월 18일부로 ICP와 연계된 허가체제인 STS(Strategic Trade Scheme)로 변경되었다.

사. 수단 대상 무기 및 군사품의 수출금지에 관한 회람(Circular No:8/2005)
유엔안보리결의 1591호(2005)에 근거하여 수단으로의 무기 및 군용물자의 수출금지 조치가 '05년 4월 25일 공포 및 실시되었다.

아. 콩고 대상 무기 및 군수품의 수출금지에 관한 회람(Circular No:16/2006)
유엔안보리결의 1698호(2006)에 근거하여 콩고로 무기 및 군용물자의 수출금지 조치가 06년 9월 6일 공포 및 실시되었다.

자. 북한 대상 수출금지에 관한 회람(Circular No:22/2006)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2006)에 근거하여 북한으로 군용물자 및 사치품 수출금지 조치가 06년 12월 28일 공포 및 실시되었다.

차. 이란 대상 수입, 수출, 통과금지에 관한 회람(Circular No:6/2007)
유엔안보리결의 1737호(2007)에 근거하여 핵무기, 미사일 등 WMD 관련 물품에 대한 이란과의 수입, 수출, 통과금지가 '07년 2월 8일 공포되어 9일 실시되었다.

카. 이란, 북한을 대상으로 한 특별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회람(Circular No:15/2007)
전략물자와 연관되지 않은 물품에 한해서 이란과 북한으로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관련 TradeNet 허가신청 특별서류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가 '07년 6월 14일 공포되어 '07년 7월 15일 실시되었다.

타. 이란으로부터 수입 금지에 관한 회람(Circular No:16/2007)
유엔안보리결의 1747호(2007)에 근거하여 이란으로부터 군용물자 수입 금지가 07년 6월 14일 공포되어 7월 15일 실시되었다.

파. 전략물자통제 및 화학무기조약국 새 홈페이지 개설에 관한 회람(Circular No:2/2008)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는 <<http://www.customs.gov.sg/stgc>>로, 화학무기금지조약 담당기관은 <<http://www.customs.gov.sg/nacwc>>로 웹사이트가 이전되었다.

하. 싱가포르 전략물자 통제리스트 수정에 관한 회람(Circular No:1/2009)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통제리스트의 개정을 반영하여 싱가포르 전략물자 통제 리스트를 개정하였다.

III. 수출통제 지역 및 품목

1. 수출통제 지역

싱가포르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SGCA에서는 수출통제 지역과 非 수출통제 지역간의 구별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시에는 목적지에 상관없이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에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결의(UNSCR)을 채택할 경우 싱가포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회람을 발행하여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금수조치를 취하는 등 무역거래 제한을 실시해왔다. '06년 12월, 싱가포르 정부는 UNSCR 1718호에 근거하여 북한으로 사치품,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07년에는 UNSCR 1737호(2월)와 UNSCR 1747호(7월)에 근거하여 이란과의 WMD 물품 및 군용물자 거래를 금지하였다. 또한, UNSCR 및 수출입규정 (RIEA : Regulation of Import and Export Act)에 근거하여 아프리카 內 특정 제재대상 국가¹⁶⁾에 대한 무기 및 군용물자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한편, 국제연합법(United Nations Act) 및 국제연합(反테러조치)규정(United Nations (Anti-Terrorism Measures) Regulations)에서는 싱가포르 국민이 국내외에서 무기 및 관련 기자재¹⁷⁾를 직·간접적으로 테러리스트에게 수출, 판매, 공급, 발송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탈레반 및 알카에다에 연루된 개인 및 조직으로 무기, 탄약, 군사 차량 및 장비, 준군사 장비 등 무기 및 군수품(예비부품 포함)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¹⁸⁾

2. 통제품목

가. 전략물자 통제품목 리스트 (Strategic Goods Control Lists)

전략물자 통제품목 리스트는 전략물자통제법(SGCA) 통제 하에 있는 전략물자/기술 목록이다. 수출, 환적 및 통과시 전략물자 및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전략물자 허가

16)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라이베리아, 르완다, 시에라 리온, 소말리아, 코트디부아르, 수단, 콩고, 이라크가 이에 해당된다. <<http://www.customs.gov.sg/stgc/leftNav/san/>>.

17) 흔히 말하는 종류의 무기, 탄약, 군사용 차량, 군사용 또는 준군사용의 설비 및 교환부품을 의미한다.

18) 단 국가별로, 제재 품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화학 무수 산성물에, 콩고, 코트디부아르, 소말리아는 모든 종류의 군사 항공기(예비부품 포함)에 대한 수출이 금지되어있다. 통제품목리스트는 STGC의 사이트 <<http://www.customs.gov.sg/stgc/leftNav/sa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를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전략물자의 수출, 환적, 통과 외에도 특정 항목은 중개 및 기술의 무형 이전(ITT: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도 통제 대상이 된다.¹⁹⁾

'08년 1월 1일부로 SGCA가 개정됨에 따라, 통제리스트도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리스트 중 1/3 가량만 반영되었던 것에 비하여 이번 개정으로 전 품목을 자국 통제리스트에 포함하였다.²⁰⁾ 이에 따라, 통제리스트에 최신 컴퓨터, 전자통신 장비, 해상 및 추진 체계 등 약 1000여개 품목이 추가되었다.²¹⁾ 또한 통제리스트를 법(Act)에서 하위규정(subsidiary legislation)으로 전환을 요청함으로써 개정시 효율성 및 신속성 증대를 꾀하였다.²²⁾

통제리스트에는 품목 마다 주석에 HS 코드가 기재되어 있다. 이 리스트는 물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기술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Part I(군용물자)와 Part II(이중용도 물자)로 구성되어 있다.

(1) Part I : 군용물자(Munition List) - ML01 ~ ML22

총, 포탄, 폭발물, 미사일, 로켓, 전투기 등의 개발, 제조, 사용을 위한 물자,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재되어 있으며 바세나르 체제(WA)의 군용물자 리스트와 일치한다. 또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의 통제품목도 일부 군용물자에 기재되어 있다.

(2) Part II : 이중용도물자 (Dual-Use List)

0에서 9까지의 카테고리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는 a. 시스템, 장비 및 부품, b. 시험, 조사 및 생산 장비, c. 물품, d. 소프트웨어, e.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²³⁾

수출, 환적 및 통과시에는 통제리스트 상에 있는 군용물자 및 이중용도 물자 모두 통제하고 있으며 기술의 무형 이전과 중개시에는 아래와 같이 민감한 품목을 위주로 부분적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3>과 같다.

19)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v.sg/stgc/leftNav/str/>>.

20) The Strategic Goods (Control) (Amendment) Bill Second Reading Speech by the Minister of State for Trade & Industry Mr S Iwaran During Parliament Sitting on 17 Sep 2007.

21) Jay Philip Nash and Richard Glen Young, 'East Asian Export Control Update: Continued Development of Key Supplier and Transit States' - Special Report,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March/April 2007.

22) The Strategic Goods (Control) (Amendment) Bill Second Reading Speech by the Minister of State for Trade & Industry Mr S Iwaran During Parliament Sitting on 17 Sep 2007.

23)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 포함된 통제리스트 및 EU 통제리스트와 구성이 동일하다.

<표 3> 통제리스트 및 통제범위²⁴⁾

	수출, 환적 및 통과	기술의 무형 이전	중 개
군용 물자	ML1 ~ ML22 (全 품목)	ML 21, ML22	ML1, ML2, ML3, ML4, ML8a 1~5, 7, 10, 11, 13a, 13c, 15, 18~21, 23, 26, 27, 28, 32j, 33, 34 ML8.b.1~5, ML8.c.1~9 (2제외), ML8.d.1 ~ 10 (4, 7제외), ML8.e.1~6, 8.~13, 15~18, ML8f, ML8g
이중용도 물자	0 ~ 9 (全 품목)	0D, 0E, 1D, 1E, 2D, 2E, 3D, 3E, 4D, 4E, 5D1, 5E1, 5D2, 5E2, 6D, 6E, 7D, 7E, 8D, 8E, 9D, 9E	없음

나. 최종용도(End Use) 통제

리스트 통제 이외에도, SGCA는 캐치올(catch-all)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전략물 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WMD 또는 그와 관련된 물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용되는 통제이다. 관할당국으로부터 WMD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것으로 통 보된 경우(inform), 혹은 본인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알았을 경우(know), 또는 그것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reason to believe)에는 통제리스트 리스트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물자와 기술은 캐치올 통제의 대상이 된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불법 전략물자 거래 행위에 관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위험 신호, 즉 "Red Flag"를 체크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한 항목이라도 유사한 경우 불법거래 여부를 의심해야하며 당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 관세청은 16항목에 걸쳐 핵물질 거래/운송시 당국에 통보해야할 사 항들을 명시하였다²⁵⁾.

24)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v.sg/stgc/leftNav/str/>>.

25) 16가지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싱가포르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ustoms.gov.sg/stgc/leftNav/san/Other+Red+Flags+Indicators.htm>>.

IV. 수출허가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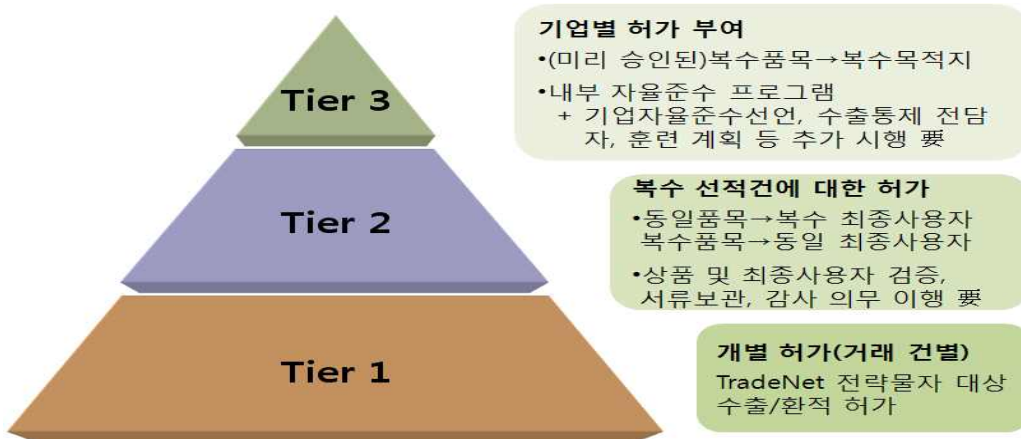
1. 수출, 환적, 통과 혹은 기술의 무형이전²⁷⁾

가. 전략물자 무역계획(STS, Strategic Trade Scheme)

싱가포르 정부는 '07년 6월 18일부로 '전략물자 무역계획' (STS, Strategic Trade Scheme)을 실시하였다. 이는 업계의 수출통제 자율준수체제 도입을 장려하여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토록 함과 동시에 안전성이 보장된 합법적 전략물자 거래에 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허가 형태는 내부자율준수체제(ICP, Internal Control Program) 도입 수준에 따라 Tier 1, Tier 2, Tier 3로 분류되며 Tier가 높아질수록 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융통성 수준이 높아진다.²⁸⁾ 즉, 강력하고 효과적인 ICP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전략물자 허가절차가 더 간편해진다. 이 계획은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을 수출, 환적, 통과 혹은 전략기술을 전송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STS의 Tier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전략물자 무역계획



26) 전략물자 수입시에는 이하 설명될 전략물자 Tier 허가 신청이 요구되지 않는다.

27) 전략물자를 직접 휴대하고, 외국에 나갈 경우도 허가 대상이다. 또한 싱가포르 관세청은 자유무역지대(FTZ)내 검문소에서 의무적으로 전략물자허가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정기적 감사를 통해 불시에 확인할 수 있다.

28) 기존 ICP제도였던 기업승인체제(ACS, The Approved Company Scheme)는 '07년 1월 1일부로 3-tier STS 허가체제로 대체되었다. 기존 ACS시행 기업들은 ICP시행 수준, 전략물자 수준, 최종행선지, 최종수하인/위탁인 혹은 최종사용자에 따라 Tier 2 혹은 Tier 3 허가를 신청할 자격을 얻는다.

다만, STS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²⁹⁾

- ① 핵,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전략물자/기술
- ②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국으로 전송될 전략물자/기술
- ③ 수송과정이 불법위탁매매인 경우(전략물자를 당국 허가없이, 수출/수입시)

핵, 생화학무기와 관련된 물자/기술은 전략물자 여부와 관계없이, ‘캐치올’(catch-all) 통제가 적용되며 개별허가에 해당하는 Tier 1 허가만 받을 수 있을 뿐 Tier 2, 3 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 또한 화학무기금지조약(CWC) 비회원국으로 화학물품을 이전 시에는 Tier 3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유엔안보리 제재국 및 제재 대상에 의도적인 전략물자/기술 (재)수출, 환적, 경유도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무허가로 전략물자 수출/수입시 관세청에서 즉시 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권한을 갖는다.

Tier 2, 3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STS 허가신청 자격을 갖추어야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싱가포르 관세청에 거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b) 특히 Tier 2, 3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관세청내 수출통제제도 준수 기록이 좋아야 하고 ICP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³⁰⁾

나. 허가 종류 - Tier 1

개별 허가로 사전 신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주로 Tier 2, 3 자격이 없는 모든 거래가 이에 해당된다. 주로 거래관계가 단기적 성격을 띠는 때 이러한 종류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복수 거래자(e.g. 전략물품/기술 보유자) 대신 허가신청을 하거나 일회성 거래 혹은 시급한 거래일 경우 Tier 1 허가를 신청한다.

(1) 처리 및 유효기간

Tier 1 신청 후 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장 5 근무일이며³¹⁾ 발급된 허가의 유효기간은 22 근무일이다.³²⁾ 한편, 전략기술 무형이전(ITT)도 사전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7 근무일이다. 발급된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³³⁾

29) Handbook on the Strategic Trade Scheme(STS) 2008.6.23.

30) Handbook on the Strategic Trade Scheme(STS) 2008.6.23.

31) 다만, 좀더 정밀한 심사 혹은 추가 정보/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허가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http://www.customs.gov.sg/stgc/leftNav/per/Exports+Transshipments+and+Transits.htm>>.

32) 운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단, 재수출 허가의 유효기간은 14일이다.

33) 필요시 싱가포르 관세청에 관련양식을 제출하여 사전관정을 신청할 수 있다.

<<http://www.customs.gov.sg/stgc/leftNav/per/Intangible+Transfer+of+Technology+%28ITT%29.htm>>.

허가취득 후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 ① 싱가포르 관세청이 해당 기업에 불시에 감사를 실시할 것을 대비하여 매번 전략물자 운송사항을 기록해 놓는다.
- ② 허가증 소유자로서 요구되는 기타 책임사항들을 준수한다.

(2) Tier 1 신청방법

(재)수출, 환적, 통과인 경우 TradeNet을 통해 허가를 신청³⁴⁾해야 한다. 전략기술 무형이전(ITT)의 경우에는 STGC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 C를 다운로드 받아 신청토록 한다.³⁵⁾ 신청자가 관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단, ITT의 경우에는 ②, ③, ⑤만 제출한다.

- ① 최종사용자 진술서 혹은 증명서
- ② 수출 허가 및 수출국으로부터 동일한 영문본 서류 (해당되는 경우)
- ③ 수입국으로부터 수입목적확인서
- ④ 최종사용자 기업 정보 및 웹사이트
- ⑤ 해당 물품에 대한 기술 명세서 예) 사용설명서, 안내서, 소책자, 데이터 시트 등
- ⑥ 사업 거래 문서 예) 주문 용지, 계약서, 통지서, 선화증권, 항공 화물 운송장, 거래 관련 통신 등
- ⑦ 기타 보충서류

고유참조번호(URN : Unique Reference Number)를 인용해 서류를 싱가포르 관세청으로 제출하면 되며 팩스(+63-6337-5212), 이메일(customs_stgc@customs.gov.sg)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 허가 종류 - Tier 2

일정 고객들과 특정(specified) 상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 신청하는 허가의 종류이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다수 전략물자/기술을 (재)수출, 환적하고자 하는 수출자, 제조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Tier 2 허가 사용시 여러 차례에 걸쳐 운송이 가능하다. Tier 2와 3은 Tier 1과 달리 한번 허가되면, 사전 승인된 전

34) TradeNet을 통해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TradeNet에 회원가입을 하여 직접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 화물업자 혹은 TradeNet@서비스센터를 통해, 대신 허가신청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TradeXchange내, TradeNet 섹션 참조.<<http://www.tradexchange.gov.sg>>.

35) 모기업이 해외부서/자사로 전략기술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식C는 ITT에만 해당되며 우편 혹은 소포를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는 TradeNet을 통해 신청토록 한다. 양식 C는 다음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www.customs.gov.sg/stgc/topNav/ese/Forms.htm>>.

략물자 TradeNet허가 대신 보통 TradeNet허가를 제출한다.³⁶⁾ 또한 최종사용자 진술서 혹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허가를 발급받은 자는 관련 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관세청에서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³⁷⁾

(1) 허가 범위

Tier 2 허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Tier 2 허가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설한 수출통제 자율준수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싱가포르 관세청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① Tier 2 허가기간 한도 내에서 운송되는 한정된 양/금액의 특정 단일 물품
- ② 특정 수하인, 위탁인, 최종사용자
- ③ 특정 용도
 - 1) '다수' 고객/최종사용자에 '특정 단일'물자 및 관련 기술 이전 혹은,
 - 2) '특정 단일' 고객/최종사용자에 '다수' 물자 및 관련 기술 이전 중 하나여야 한다.³⁸⁾

(2) 특징 (장점, 처리 및 유효기간)

- ① 단 한 번의 승인만으로 동일한 물자/기술을 동일한 최종사용자로 (재)수출, 환적 등 동일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② Tier 2 허가는 선적 후 3일내 신고할 수 있다. (c.f. Tier 1은 사전신청해야 한다.)
- ③ Tier 2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허가의 갱신은 만료되기 2개월 전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 여부는 관세청에서 결정한다. 한편, Tier 2는 허가를 받기까지 서류제출 후 14 근무일이 걸린다.

(3) 신청 기준

Tier 2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하다.

- ① STS 허가신청 기본 자격기준 : 싱가포르 관세청 하에서 양호한 준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ICP 실시하고 있는 경우
- ② ICP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36) 단, 보통허가 신청서 'remark'란내 승인된 Tier2/Tier3번호와 상품번호(product code)를 기입해야한다.
<<http://www.customs.gov.sg/stgc/leftNav/per/Exports+Transshipments+and+Transits.htm>>.

37) p27, Handbook on the Strategic Trade Scheme(STS) 2008.6.23.

38) 단, 대량파괴무기(핵, 생화학) 관련 물자/기술은 Tier 2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물품은 Tier 1 대상으로 제한된다. A Handbook on the Singapore Customs Strategic Trade Scheme (STS), Page 16.

- 1) 품목확인 : 합법적 거래를 위한 품목 확인 시행 절차 수립, 기업 내 싱가포르 통제리스트 공유
- 2) 최종사용자 확인 :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여 최종사용자가 불법거래를 하는 '유령기업'이 아닌 합법적인 기업/법인임을 확인하는 시행 절차 마련
- 3) 문서 보관 : 싱가포르 관세청의 요청시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모든 전략물자 거래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보관토록 하며 이 기록은 허가 후 최소 5년 이상 보존되어야 함
- 4) 감사 : ICP를 준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에서 명기한 조건들을 위반하는 사항, 혹은 잠재적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e.g. 선적 혹은 환적 후 7일 이내) 싱가포르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4) 의무 사항

Tier2 허가 획득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싱가포르 관세청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대비하여 전략물자 선적 사항을 제 때에 기록, 문서화 한다.
- ② ICP 변경사항을 싱가포르 관세청에 통보한다.
- ③ 신청자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5) Tier 2 신청방법

STGC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 H를 다운로드 받아³⁹⁾ 완성본을 자사 ICP 검토사항⁴⁰⁾과 함께 제출한다. 주로, 이메일, 팩스 혹은 우편을 통해 관세청 전략물자통제부로 송부한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신청처리의 일부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전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라. 허가종류 - Tier 3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다수 전략물자/기술을 (재)수출, 환적하고자 하는 수출자, 제조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Tier 3 허가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종류의 전략물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운송 가능하다. 또한 Tier 2와 동일하게 최종사용자

39) 모든 신청서 양식은 다음의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customs.gov.sg/stgc/topNav/ese/Forms.htm>>.

40) 주로 4.4(b)조항에 명시된 ICP 4개 이행조건을 상세화하고 있다.

진술서 혹은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관세청 요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Tier 3 허가의 신청자 중에는 기존 고객과 다양한 품목으로 거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지사로 품목을 재분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거래량으로 인해 신속한 운송이 중요한 경우이다. Tier 3은 회사 품목/기술을 사전승인된 지역으로 (재)수출하는데에 적합하다.

(1) 허가 범위

사전 승인된 전략물품 및 기술을 사전 승인된 행선지(수출통제체제 가입국 혹은 국제안보 우려국이 아닌 나라)로 이전(물리적 (재)수출 및 기술 이전)⁴¹⁾ 시 적용 가능하다.

(2) 특징 (장점, 처리 및 유효기간)

- ① 단 한 번의 승인만으로, 동일한 물자/기술을 동일한 지역으로 (재)수출 환적할 수 있다.
- ② Tier 2와 같이 선적 後 3일 內 신고하면 된다.
- ③ Tier3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허가의 갱신은 만료되기 2개월 전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 여부는 관세청에서 결정한다. 한편, Tier 3은 허가를 받기 까지 서류제출 후 약 30 근무일이 걸린다. 담당기관이 해당 물품 혹은 거래에 대한 추가 정보 혹은 보충 서류가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3) 신청 기준

Tier 3 허가 신청은 Tier 2의 요건 외에도 다음의 3요소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 ① 기업공약 : 전략물자통제법 및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하겠다고 기업내 모든 구성원 및 고객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
- ② 전략물자통제 책임자 선정: 회사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로 기업 판매/마케팅 부서와 관련되지 않은 고위 경영진으로 책임자 선정
- ③ 교육 : 전략물자 업무 담당자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4) 의무 사항

Tier3 허가 획득시 Tier 2 요구 사항 외에도 매달 전략물자/기술 거래 내역을 싱가포르 관세청에 제출⁴²⁾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41) 단, 화학무기금지조약 비 가입국으로 향한 화학물질과, 핵, 생화학 무기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기술은 Tier 3허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물품은 사전에 Tier1허가신청을 해야한다.

42) 신고 거래 내역은 품목명 및 설명서, 전략물자 분류코드, 구매주문서, 세금 통지서 혹은 허가번호, 최

(5) Tier 3 신청방법

STGC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 I를 다운로드 받아 완성본을 자사 ICP검토사항⁴³⁾과 함께 제출한다. ICP와 관련된 자체 시행절차 개요를 제출해야 한다.⁴⁴⁾ 신청서는 이메일, 팩스 혹은 우편을 통해 관세청 전략물자통제부로 송부한다. 관세청은 허가 심사절차의 일부로 기업을 직접 방문해 ICP를 평가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전의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2. 중개⁴⁵⁾

중개행위는 STS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07년 전략물자중개(통제)령”에 따라 무기폭약 중개목록 상에 있는 물품은 중개하기 전에 먼저 싱가포르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가. 중개 등록 (신청방법, 처리기간)

중개 등록시 먼저 STGC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 A를 다운로드받아 완성본과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다.⁴⁶⁾ 주로, 이메일, 팩스 혹은 우편을 통해 전략물자통제부로 송부한다. 한번 등록하면 5년간 유효하다.

나. 중개 허가 (대상, 신청방법)

거래당사자가 중개물품이 핵생화학무기 혹은 대량파괴무기(WMD)와 연관되었음을 a) 당국으로부터 통보받거나(notified) b) 인지하거나(knows), c) 의심할만한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has reasonable ground to suspect) 중개허가를 신청해야한다. 이때는 STGC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B를 다운로드 받아 완성본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한다.⁴⁷⁾ 이메일, 팩스 혹은 우편을 통해 전략물자통제부로 송부하며 허가처리는 최소 7 근무일을 필요로 한다.

중사용자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43) 주로 5.4(b)조항에 명시된 ICP 7개 이행조건을 상세화하고 있다.

44) 이 개요의 요구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지B를 참조하기 바람

45)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이전되는 물자 및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개통제는 싱가포르내 내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된다.

46) 중개하려는 물품의 특성을 기술한 서류(e.g. 상품 브로셔, 분류, 사진 등)와 해당 물품에 대한 기술 명세서가 해당된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필요시 이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47) 해당 물품에 대한 기술 명세서, 수출허가서 그리고/혹은 최종사용자 진술서 혹은 증명서가 해당된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필요시 이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수출통제 기구 및 역할⁴⁸⁾

가. 싱가포르 관세청 (Singapore Customs)

전략물자 관리법(SGCA)의 소관관청은 통상산업부(MTI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이다. 하지만 실제 업무는 통상산업부의 임명에 따라 재무성(Ministry of Finance) 산하의 싱가포르 관세청⁴⁹⁾이 주도하고 있다. 싱가포르 관세청이 담당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수출통제법의 시행
- 중개업(Brokering)의 등록 신청 처리
- 기술의 이전과 중개행위에 관한 허가 신청의 처리
- 홍보 및 교육활동
- 국제 협력 활동
- 통관 및 자유무역 지대(FTZ)내 통제 및 국내법 집행
(싱가포르 경찰 (SPF : Singapore Police Force) 당국 및 그 외 감독관청의 지원을 기반으로 실시)
- 전략물자의 물리적 운송 (수출, 환적, 통과)에 대한 허가신청 심사
- 유엔안보리결의에 근거한 수출금지 조치도 담당하고 있다.

'08년 7월 1일 기준으로 싱가포르 관세청은 6개국(Division) 및 본부장 직할의 2개 부서(Branch)로 구성되어 있다(관세청 조직도는 부록 1 참조).

그 밖의 수출통제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다.

나. 싱가포르 경찰 무기·폭약 허가부

(A&E : Arm and Explosives Licensing Division, Singapore Police Force)
무기, 폭약물, 방호복, 강철 헬멧, 수갑, model gun등의 수출에 대해서 담당

다. 화학무기조약국 (NA : National Authority,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물질, 군용화학제재원료의 수출을 관리

48) 각 기관 연락처는 부록 2 참조

49) 싱가포르 관세청은 2003년 4월 1일 국제 기업청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Board) (안전수출 관리 및 무역 담당)과 관세청(Customs and Excise)이 통합되어 출범하였다. 이렇게 담당기관이 일원화됨에 따라, 거래업체 및 사업자들의 활동이 더 수월해졌다.

라. 방사선방호 및 핵과학 센터⁵⁰⁾

(CRPNS : Center for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cience)

방사선장치, 방사성물질의 수출을 관리하고 국가환경국(National Environment Agency)의 산하에 있으며 여러 전문가와 TradeNet 관리자가 함께 근무

마. 오염관리국 (PCD : Pollution Control Department)

살충제와 오존층 파괴물질인 클로로플루오로카본(chlorofluorocarbon, CFC) 및 furlong과 납 · 카드뮴 · 수은 등의 수출을 관리

V. 집행 및 벌칙

1. 집행

SGCA에는 수출입통제법을 집행하고 각 기업의 전략물자 관련활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위해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수출통제 집행은 싱가포르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관세청은 1) 운송물품과 건물을 조사할 수 있으며 2) 기업 내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3) 컴퓨터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있다.⁵¹⁾ 또한 경미한 위반으로 행정 벌(벌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기업명 등은 공표되지는 않는다.⁵²⁾

2. 벌칙과 단속

가. 처벌

전략물자(통제)법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

50) 방사선방호센터는 '07년 7월 1일 보건과학국(HSA : Health Sciences Authority)에서 국가환경국(NEA, National Environmental Agency)로 이전되었고, 이름도 방사선 방호센터(CRP)에서 방사선 방호 및 핵과학 센터(CRPNS)로 개명되었다.

51) 필요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압수를 시행할 수 있다.

52) CISTEC, 'Singapore's Experience in Implementing Strategic Goods Control', Global Transshipment and Enforcement Seminar, Bangkok, Thailand 18-21 Jul 06 (Singapore).

<표 1> 위반행위 및 처벌내용⁵³⁾

위반행위	처벌
(1) 전략물자/기술의 불법 이전/중개	- 1차 위반 : · 10만 싱가포르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해당 물자/기술 가격의 3배 상응하는 벌금 중 높은 쪽 · 징역 2년 이내
(2) 허가 또는 등록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차 위반 이후 : · 20만 싱가포르달러 이내의 벌금 또는 해당 물자/기술 가격의 4배 상응하는 벌금 중 높은 쪽 · 징역 3년 이내
(3) 허가 또는 등록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5만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4) 허위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 경우	- 징역 12개월 이내
(5) 요구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기록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 1만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 징역 6개월 이내
(6) 당국의 통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7) 당국 직무집행방해	
(8) 당국에 의한 컴퓨터 및 관련 기기 접근을 거부한 경우	
(9) 특정 정보 및 문서를 불법 게시한 경우	- 6천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 징역 12개월 이내
(10) 기술 위반	- 1만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전략물자통제법에서는 수출규제 위반에 관한 법인 책임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 임원⁵⁴⁾의 동의를 바탕으로 혹은 그 임원의 과실로 위반이 행해졌을 경우 관련 임원과 법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판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법인의 관련 사업을 사원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원에게 책임을 묻고 재판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전략물자통제법에서는 파트너십과 비법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정하고 있다. 무허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관세청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이 때 싱가포르 관세청에 해당 전략 물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데에

53) CISTEC, 'Singapore's Experience in Implementing Strategic Goods Control', Global Transshipment and Enforcement Seminar, Bangkok, Thailand 18-21 Jul 06 (Singapore)

54) 여기서 지칭하는 임원은 법인의 단속자, 경영위원회의 멤버, 최고책임자, 부장, 사무장, 또는 이러한 종류의 임원,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그 외의 사람을 의미한다.

대해 해명해야한다.⁵⁵⁾ 벌칙은 전략물자 수출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사시 해당 물자는 수사기간 동안 억류되며 수사결과에 따라 압류 및 몰수될 수도 있다. 문서 보관과 관련된 위반행위시에는 범법자가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위반행위로 적발시 의심되는 경우 특정 위반행위(표1의 (1), (3), (4), (5))에 대해서는 1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금액의 지불시 수사관사의 재량에 따라 불기소될 수도 있다.

나. 그 외 제재 법률

그 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법률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기타 위반행위 제재 법률

법률(전략물자)	형벌
(1)무기/폭약법 (무기와 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수갑/철제 헬멧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무기를 수출한 자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자는 품목당 1천 싱가포르달러이내의 벌금형 및 3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한다. 적발된 전략물자를 운송한 선박/항공기의 선장/기장과 소유자도 책임을 묻고 5천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에 처한다.⁵⁶⁾ 재판소는 벌금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선박/항공기를 억류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 폭약 폭약을 무허가로 수출한 자는 품목 당 1천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및 3년 이내의 징역에 처한다. 적발된 전략물자를 운송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도 책임을 묻고, 1천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에 처한다.
(2)화학무기금지법 (화학물질 : 군용 화학제재원료)	1만 싱가포르 달러 이내의 벌금형 및 2년 이내 징역에 처한다.
(3)방사선방호법 (방사선장치/ 방사성물질)	방사선방호법 위반시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 및 12개월 징역에 처한다.

55) 관세청에 다음 이메일, 팩스 혹은 주소로 연락할 수 있다.

E-mail : customs_stgc@customs.gov.sg fax: +65-6337 5212

Mail :

Strategic Goods Control Unit
Trade Control Branch, Singapore Customs
55 Newton Road #06-02
Revenue House
Singapore 307987

다. 항소 (권리 및 절차)

위반행위로 형에 처해진 개인/기업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추후에 항소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라. 위법 수출 단속 사례

전략물자를 무허가로 수출한 싱가포르 기업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던 대표적인 사례는 '05년 7월 19일에 있었다. 싱가포르 관세청에 따르면, 통신기기 생산업체인 Far Easttron사가 통제리스트에 포함된 2만 1천 달러 상당의 집적회로(IC)를 독일, 중국, 대만으로 무허가로 수출하려 한 혐의가 '05년 5월 17일 적발되었다. 품목은 주로 상업 위성과 항공관제장치에 쓰일 예정이었다. 이 회사는 바로 기소되어 7월 15일 유죄가 인정되었고, 2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는 '03년 1월, 싱가포르 전략물자(통제)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 위법수출 처벌 사례였다.

또한 '06년 6월 27일에는 시리아 무기업체로 2만개의 소총을 공급하려던 싱가포르 국적자가 적발되었다. Colin MakYew Loong씨는 B.R.Chaandrran씨와 함께, 3.4백만 미국달러(5.4백만 싱가포르 달러)가치의 AKMS 소총을 불가리아를 경유하여 시리아로 운송하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였다. 재판 결과, Chaandrran씨는 무기 및 탄약 등 전략물자 관련 업체인 Dannhauser사 직원으로 밝혀졌다. 그의 소속사가 시리아 무기업체에 물품 납부를 거부하자 스스로 이 일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IT관련 스위스사에 일하는 Loong씨를 끌어들이어 불가리아 판매자와 시리아 구매자 간 중개를 진행하였고 문서를 위조하여 거래사실을 은폐하였다. 신고를 받고 조사를 착수한 싱가포르 관세청 직원들은 Loong씨의 컴퓨터에서 전 해 5월과 9월 사이에 교환된 관련 이메일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그가 미등록 상태에서 중개를 실시한 사실도 밝혀냈다.⁵⁷⁾

56) 단, 해당 선장/기장 또는 소유자가 무기 및 폭약을 싣거나 보관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위법행위를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7) 'Singaporean tried to supply 20,000 rifles to Syrian', KhushwantKhushwantSingh Jun 27, 2006 Singh 2006, The Straits Times.

VI. 기업의 자율수출관리

1. 사내 준수체제(ICP)

싱가포르 관세청은 기업에 사내 준수체제(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의 제정, 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03년 11월 1일에는 사내 ICP를 설립한 기업에 한해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기업승인 체제(ACS, Apporved Company Scheme)을 도입하였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효율적인 ICP제정을 위해 사내 서약서, 전략물자통제 책임자 선정, 물품 확인, 최종사용자 심사, 감사, 교육, 문서보존 등 7개 항목을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 관세청은 수출통제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준수체제를 확산하고자 '07년 6월 18일 부로, '기업승인체제(ACS)'를 개선한 '전략물자 무역계획(STS)'을 실시하였다. ICP 요구조건 중 품목확인, 최종사용자 심사, 문서보존, 교육 네 가지 항목을 충족시킬 경우 Tier 2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 사내 서약서, 전략물자통제 책임자 선정 그리고 교육 나머지 세 항목을 충족시키면 Tier 3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Tier 2, 3은 사전승인된 전략물자 TradeNet 허가 대신 보통 TradeNet 허가를 제출하는 등 허가절차가 간소해 ICP 확산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홍보

싱가포르 관세청은 싱가포르내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략물자 거래를 지원하고자 '02년 부로 각 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기존 제도가 수정되는 경우 또는 미국, 일본 등 외국 선진 제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행하였다. '07년 8월부로는 전략물자통제에 관한 새 교육프로그램이 출범하였으며 주로 산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⁵⁸⁾ 기업 요청시에는 방문 세미나를 실시하기도 한다. 세미나에서는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 개요, 전략물자 통제리스트를 포함한 자료를 유료 배부한다. 세미나 종료 후에는 싱가포르 관세청장 명을 지닌 '수강증명서'를 발행하며 '수료자'로 정부에 등록된다.

또한 타국 정부와 협력 하에 무역인 대상 세미나도 진행한다. 한 예로, '05년 5월 31일에, 일본 경제산업성과 싱가포르 관세청간 공동 주최하에 수출관리세미나가 개

58) 관세청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v.sg/stgc/leftNav/cou/>>.

최되었다. 약 200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는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한 양국 민간기업 수출관리 책임자를 통해 자회사 수출관리 제도를 소개하였다. 또한 '05년 6월 29, 30일 양일에 걸쳐서 싱가포르 미국대사관과 싱가포르 국제기업청의 공동주체로 수출관리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약 500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에서 미 국무부와 상무부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및 미 수출관리규정(EAR)을 설명하였고 싱가포르 관세청에서는 미국 수출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튿날 오후에는 세미나 강사와 출석자간 질문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모든 기업은 먼저 '전략물자통제 기초반 과정 - 전략물자 통제법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이해'를 수강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자율준수제도 원론'(SGC-ICP)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강의 날짜는 웹사이트를 참조59). 최소 강의일 7일전에 강의 신청서 제출 및 강의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장소는 이메일/팩스로 공지된다. 강의 신청서는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59) 향후 강좌 계획은 <<http://www.customs.gov.sg/stgc/topNav/new/Upcoming+Events.htm>> 참조.
과거 강좌 내역은 <<http://www.customs.gov.sg/stgc/topNav/new/Past+Events.htm>> 참조.

VII. 요약 및 결론

싱가포르 수출통제 시발점은 1953년 수출입통제법(RIER)제정에서 찾을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정립한 시점은 9.11테러가 발생한 2000년대 초반이다. 법적으로 '03년 전략물자통제법(SGCA)이 제정되어 국제안보상황에 맞춰 수출통제 제도를 재정비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관세청으로 수출통제 업무를 일원화하였으며 화학 무기조약국, 오염관리국 등 관련 수출통제기관과 협력 하에 전략물자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무역과 운송에 대한 국가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개항으로서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데에 수출통제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동남아 지역의 주요 수송 허브인 싱가포르가 WMD 불법무역 활로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WMD 관련 물품 혹은 최종사용자가 WMD 확산 기여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캐치올 규제를 적용하여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은 STS 허가체제 내에도 Tier 1허가만 받을 수 있을 뿐 Tier 2, 3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중개시에도 WMD와 연관됨을 정부로부터 통보 받거나, 인지하였거나 혹은 의심스러운 경우 중개 등록 외에 허가절차를 추가적으로 신청해야한다. 수출지역에 있어서도 특별히 법적으로 규제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개발 우려국으로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지역인 경우 거래품목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렇게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들이 수출통제제도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일례로 온라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인 TradeNet를 최신화하여 모든 허가신청의 접수 및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허가 처리시간을 줄이며 신속하고 편리한 허가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있다. '07년에는 새 허가체제인 STS를 실시하여 기업별 자율준수제도 구비수준에 따라 허가절차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Tier 1 허가 유효기간이 22일이고⁶⁰⁾ 허가를 발급 받는데 5일이 걸리는 전략물자 TradeNet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데에 반해 Tier 2 이상의 허가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소 3년이고 선적 후 3일내에 신고할 수 있는 보통 TradeNet 허가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자율준수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STS는 싱가포르 정부가 효율적인 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시장친화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사례이다.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기업이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하는데에

60) 참고로 우리나라 개별허가 유효기간은 1년임.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시장을 무리하게 주도하기보다,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도 달성함과 동시에 국제안보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기업과 오랜 논의를 거쳐 설득과 이해 과정을 거친 후 합의(‘consensus’)를 도출한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정부와 기업간 신뢰관계를 형성시켜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에도 기업이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장의 규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의 정부와 시장간 ‘윈-윈’관계를 피함으로써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히 ‘당위성’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민간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민·관이 함께 정책수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안보위협으로 인한 국가 전체적 ‘손실’ 뿐만 아니라, 이를 예방하는 가운데 기업이 겪게 될 잠재적 ‘비용’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가 국제적으로 무역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참고문헌

Handbook on the Strategic Trade Scheme(STS) June 2008, pp 1 - 38
Strategic Goods Control Regulation 2007

<Web Sites and Pages>

싱가포르 관세청 (www.customs.gov.sg)

KOTRA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 (www.kotra.or.kr)

<Article>

비즈니스 타임지 2008.1.4일자 'Why export controls will affect you'

'Singaporean tried to supply 20,000 rifles to Syrian', KhushwantKhushwantSingh Jun 27, 2006Singh 2006, The Straits Times

Jay Philip Nash and Richard Glen Young, 'East Asian Export Control Update: Continued Development of Key Supplier and Transit States' - Special Report,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March/April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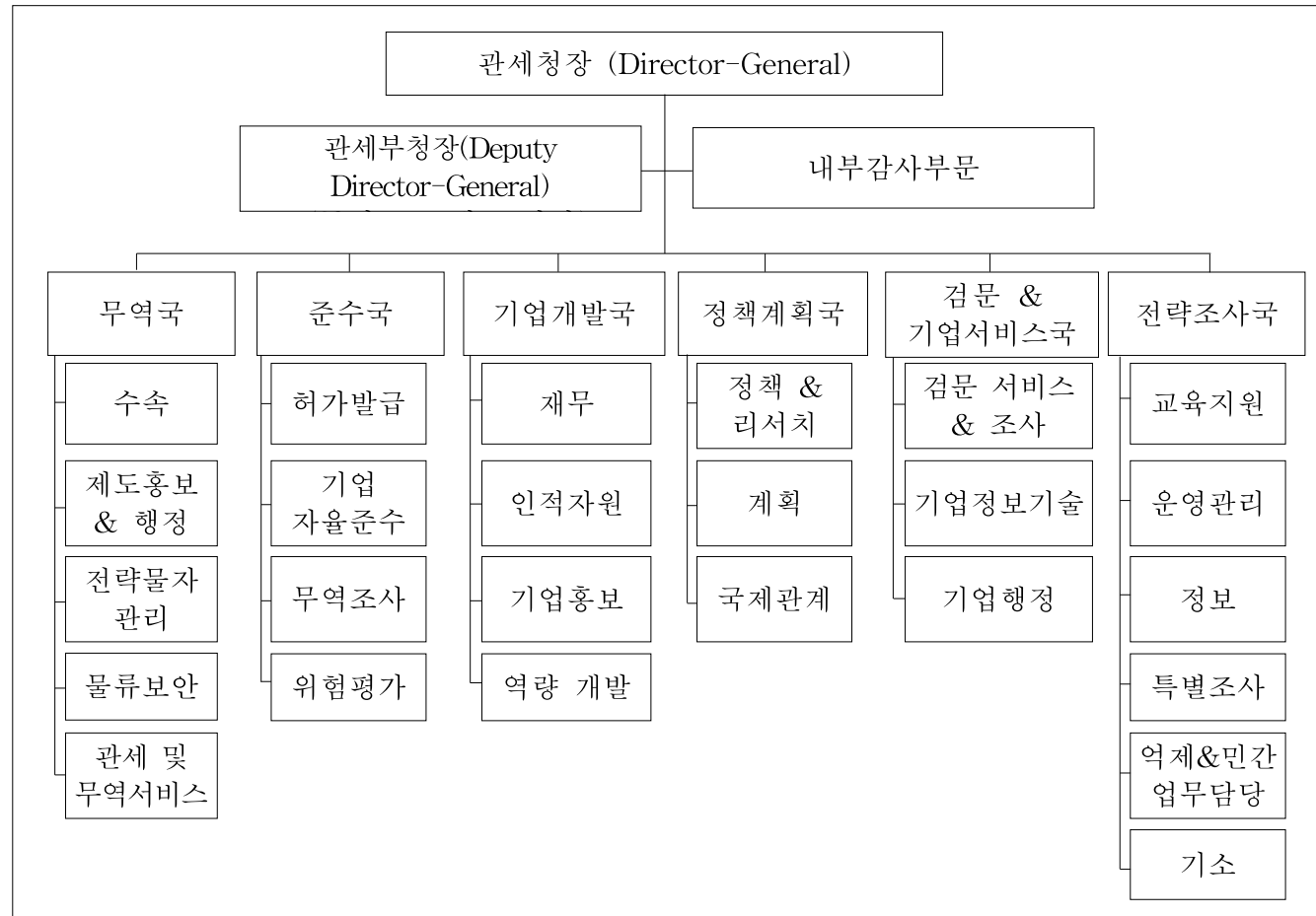
<Seminar>

'Singapore's Experience in Implementing Strategic Goods Control', Global Transshipment and Enforcement Seminar, Bangkok, Thailand 18-21 Jul 06 (Singapore)

The Strategic Goods (Control) (Amendment) Bill Second Reading Speech by the Minister of State for Trade & Industry Mr S Iwaran During Parliament Sitting on 17 Sep 2007.

"Korea - SE Asia Strategic Trade: Controls And Considerations", MKE and CITS Industry Outreach Seminar October 8, 2008 Seoul, Korea.

<그림 2> 싱가포르 관세청 조직도⁶¹⁾



61) http://www.customs.gov.sg/NR/rdonlyres/F81ED9DD-4B4C-4144-8941-87403039165C/21219/SCOrgChart_1July08.pdf

부록2

<표 4 > 각 관할부서의 연락처

관할 부서	연락처
<p>싱가포르 관세청 (Singapore Customs)</p>	<p>주소 : 55 Newton Road, #09-00 7th Floor Revenue House Box No. 3 - Strategic Goods Control Branch Singapore 307987 전화: +65-6337-5996 E-mail : customs_stgc@customs.gov.sg URL : http://www.customs.gov.sg/ http://www.customs.gov.sg/stgc</p>
<p>무역산업성(MTI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p>	<p>주소 : 100 High Street #09-01 The Treasury Singapore 179434 전화: +65-6225-9911 E-mail : mti_email@mti.gov.sg URL : http://app.mti.gov.sg</p>
<p>싱가포르 경찰 무기·폭약 허가부 (A&E : Arm and Explosives Licensing Division, Singapore Police Force)</p>	<p>주소 : 391 New Bridge Road #02-701 Police Cantonment Complex Singapore 088762 전화 : +65-6835-0000 E-mail : SPF OPS Licensing@spf.gov.sg URL : http://www.spf.gov.sg/licence/index.html</p>
<p>화학무기조약국 (NA : National Authority,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p>	<p>주소 : 20 Science Park Drive Singapore 118230 전화 : +65-6775-5137 Email : naofficer@nacwc.gov.sg URL : http://www.customs.gov.sg/nacwc</p>
<p>방사선방호 및 핵과학 센터 (CRPNS, Centre for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cience)</p>	<p>주소 : 40 Scotts Road #12-00 Environment Bldg Singapore 22831 전화 : +65-6213-0706 URL : http://app.nea.gov.sg/cms/htdocs/category_sub.asp?cid=261</p>
<p>오염관리국 (PCD : Pollution Control Department)</p>	<p>주소 : 40 Scotts Road #12-00 Environment Bldg Singapore 22831 전화 : +65-6731-9665 URL : http://app.nea.gov.sg/cms/htdocs/category_sub.asp?cid=73</p>